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지방과소관 제1호 내지 제9호를 삭제한다.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농지개량과소관 제5호다음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농지개량과	6	◦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의사용 승인	농어촌정비법 제20조
	7	◦ 농업기반시설의 폐지	농어촌정비법 제21조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경제과 소관 제7호 다음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지역경제과	8	◦ 가격등의 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-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	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

(별표1) 권한위임사무중 지역계획과 소관 제1호 및 제36호를 삭제하고 제2호내지 제38호를 제1호내지 제36호로 하며 제1호 내지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제36호 다음에 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분야별	일련번호	사무명	근거법령
지역계획과	1	○ 건설기계조종사의 신고	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
	2	○ 건설기계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	동법 제29조
	3	○ 건설기계조종사 신규면허 발급	동법 제26조
	4	○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재교부	동법 제26조
	5	○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대장 기재 및 보고	동법 제26조
	6	○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반납	동법 제26조
	7	○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	동법 제28조
	8	○ 건설기계조종사 신고의무 미이행자 과태료처분	동법 제30조
	37	○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	동법 제8조
	38	○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	동법 제8조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